

## 경기도 기숙사 사생수칙 개정공고

---

경기도 기숙사 사생수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 거

-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의결 (2019. 2. 22.)

2. 내 용

※ 붙임 참조

3. 시행일

- 2019년 3월 2일
- 이의신청시간 공고일로부터 7일

2019. 2. 23.

경기도기숙사 관장



(붙임)

##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사생수칙(안)

제정 2017. 07. 03.  
제1차 개정 2017. 11. 30.  
제2차 개정 2018. 02. 05.  
제3차 개정 2019. 03. 02.

**제 1 조(근 거)** 본 입사생 수칙은 경기도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운영규정(2018.12.18.개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한다.

### 제 9 조(일과 시간)

1. 입사생은 다음과 같이 일과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pen : 05:30
  - 조 식 : 07:00~08:00(1시간)
  - 중 식 : 운영안함.
  - 석 식 : 18:00~19:30(1시간30분)
  - 간 식 : 20:30~21:30(1시간)
  - close : 23시59분59초
  - 비 고 : 일과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중식과 간식은 정책에 의거 변동 될 수 있다.
2. 소등시간 이후의 학습은 다목적 및 스터디룸에서 관장의 지시로 생활지원 센터장은 새벽 02시까지 조정 할 수 있다.
3. 스터디룸과 다목적룸 사용시 절대 정숙 하여야 하며 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사생수칙에 의거 진행 할 수 있다.

**제 11 조(식 사)** 입사생은 일과시간표에 의한 식사시간과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사는 자기배식방법에 의하여 식당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식사는 남김없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잔반은 스스로 처리한다.
3. 입사생 외 외부인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내 행사 등에 초청된 수료생 · 외부인, 학부모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한 방문자 등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

4.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기타 음식물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반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복장(잠옷차림 지양)을 단정히 하고 모든 주방기물(수저, 물컵 등)의 입사실 반입을 금한다.

**제 13 조(방 문)** 방문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방문자는 사전에 생활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2. 방문시간은 10:00 ~ 19:00까지로 한다.

3. 방문응대는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입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4. 외부인의 사내 숙박은 불허 하며 최대 즉시 퇴사를 명 할 수 있다.

**제 15 조(외출 및 외박)** 입사생이 외출 및 외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입사생의 외박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입사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외박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박신청 불가시간 : 당일 23시 이후

3. 사전 외박신청 없이 외박할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4. 출입할 때에는 필히 출입카드(등록)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익일 귀관시 벌점부과와 기숙사 출입이 거부될 수 있다.

6. 무단 외박시 보호자에 연락 조치할 수 있다.

7. 외출 및 외박 이후 기숙사 외부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 19 조(등록 및 입사)**

1. 입사생으로 확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사등록을 마쳐야 한다.

2. 등록할 때에는 입사서약서 및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사생은 재학증명서(대학생 한함), 건강진단서(B형간염, 폐결핵 - 흉부X선 촬영)를 6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증빙서류 제출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후 센터에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사생이 기숙사 입사 할 경우 저녁 18시 이내(점심시간은 12시~1시 불가)로 한다.

## 제 20 조(입사비 및 입주금 납부)

∴

11. 정기입사비와 별도로 입사생자치회비 및 입사생 입주금을 학기별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1학기	2학기	분실시	비 고
입사생 자치회비		10,000	10,000		학생자치회는 회비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
입사생 입주 금	출입카드	25,000	25,000 (추가 입사자만)	25,000	제작기일이 약 30일 소요 - 임시카드 발급 할 수 있음 - 임시카드 분실시도 비용 차감
	시설·환경 부담금	15,000	15,000		생활시설 및 환경정비
합 계		50,000	50,000		

12. 입사생 자치회비는 의무적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3. 입사생 자치회비는 입사생 자치회가 구성시 대표에게 이체 되거나 자치회의 요청시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이때, 자치회 대표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14. 계약 만료 1개월전의 입사비는 사전 징수를 할 수 있다

## 제 21 조(상점 및 금지행위에 따른 벌점)

1. 입사생은 재사기간 중 기숙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활동을 하거나 타 입사생의 귀감이 되었을 때에는 상점은 별표 1호와 같으며, 사내에서 금지(의무사항 불이행) 사항은 별표 2호와 같다. 이때 상점은 벌점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공동벌점은 입사실 점검, 입사실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행위 등에 대한 서로간 묵인시 적용할 수 있다.

3. 벌점 20점 이상 이면 퇴사를 원칙으로 한다.

## 제 23 조(강제퇴사)

1. 관장은 입사생이 다음의 퇴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지원 모더레이터 회의를 거쳐 강제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1.1. 입사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위조하여 제출한 때

1.2. 6개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

1.3. 타 입사생으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3건이상 민원접수 된 때

1.4. 입사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1.5. 벌점 20점 이상일 때(벌점은 4학기까지 누진 적용함)

1.5.1 1차 경고 : 10점 이상일 때

1.5.2 2차 경고 : 15점 이상일 때

1.6. 도박, 절도, 폭력, 재물파손, 방화, 마약복용, 성범죄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7. 학업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기숙사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입사생 통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단계, 사이버 종교, 위험한 행동 등)

1.8. 타 입사생 또는 외부인을 입사실 및 층에 무단출입, 동반숙박, 숙박 제공하였을 때

1.9. 입사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타 입사생과 공유하였을 때

1.10.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1.11. 최종 강제 퇴사는 운영위원회에 의결에 의해 확정한다.

2. 관장은 강제퇴사자에 한하여 아래 항에 의거 재입사를 불허 할 수 있다.

2.1. 대학생 입사생 : 최대 5년

2.2. 청년 입사생 : 영구

## 제 24 조(자치회 구성과 운영)

1. 입사생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기숙사에 전달하고 기숙사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보조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치회 집행부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층 대표 8인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입사생들의 직접 선거로, 층 대표는 각 층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3. 자치회는 기숙사의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자치회의 회칙은 관장이 수리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 제 26 조(안전사고 예방)

1. 입사생은 항상 사내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하여 하며, 기숙사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책임자가 된다.
2. 생활지원 모데레이터는 항상 소화기의 위치(배전판위)를 파악 관리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전열기 사용을 금한다.
3. 기숙사 직원은 날씨, 방법상 창문이 열려 있을 경우 허락 없이 닫을 수 있다.
4. 복도에 우산을 방치를 안전상 금지한다.

## 제 27 조(공유 시설물 사용)

1. 기숙사동의 시설물은 당일 24시까지 이용가능하다.
2. 식당동의 시설물은 06:30 ~ 23:00 동안 사용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 및 출입하지 않는다.
4. 각 입사실의 인터넷 공유기는 입사실 룸메이트와 합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기숙사 입사실에 불필요한 스티커, 광고문은 벽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6. 공유 냉장고 청소는 매월 2회 실시되며 플러그 전원을 빼는 것으로 한다.
7. TV시청, 전자렌지 사용은 밤 12시 이후 사용 할 수 없다.
8. 우산받이는 입사실 출입문 안쪽 하단에 위치하여 한다.

## 제 28 조(금 연)

1. 기숙사 부지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단, 지정된 흡연부스에서만 가능.)
2. 기숙사동, 식당동, 헬스실 등에서 담배, 라이터를 방치 할 경우 직원 지시 불이행에 적용한다.
3. 기숙사(스터디룸, 다목적룸, 작은도서관, 헬스실, 세탁실 등) 담배 등 인화 물질 등 방치만 하여도 사생수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 29 조(입사생 상담)** 생활지원센터장은 입사생 상담을 입사 기간내 실시 할 수 있으며 상담시 입사생 인권, 차별, 이념, 종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
2. 생활지원센터장을 통한 상담

3. 입사생은 의무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 30 조(공동체 이삿날)** 생활지원센터장은 경기도기숙사 3인1실 한계를 공동체 이삿날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입사생은 각 사실별로 참여 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실물 및 음식물)** 입사생의 모든 분실물은 원칙적으로 입사생 본인에게 있다. 또한 분실물로 인하여 기숙사에 CCTV열람은 허용 되지 않는다.

1. 공유냉장고 물건은 주인의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되며 사생수칙에 적용 받는다.

2. 세탁물은 세탁 후 세탁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실 당사자에게 있다.

3. 기숙사 밖에서 주문한 음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사생 당사자에게 있다.

4. 기숙사 배달음식은 22시로 제한한다. 또한, 배달음식은 기숙사 정문 밖에서 수령 하여야 한다.

**제 32 조(애정 행각)** 입사생은 기숙사내에서는 신체접촉 등 과도한 애정 행각을 금지 하여야 한다.

**제 33 조(휴 관)** 관장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휴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생은 모두 귀가하여야 한다.

1. 정기휴관 기간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정하며 14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휴관 기간은 설(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휴관 기간이 속한 월의 부담금은 휴관일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 수칙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